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13
----------	-------

발의연월일 : 2024. 1. 26.

발 의 자 : 정경희 · 이인선 · 권명호
백종헌 · 이현승 · 조은희
류성걸 · 김용판 · 태영호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으로,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른 “전쟁기념”은 전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기리는 의미로 전달되어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 대상을 수정하고,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 또한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하여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쟁기념사업회법”을 “호국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전쟁기념사업회”를 “호국기념사업회”로, “전쟁에”를 “전쟁 및 호국에”로, “전쟁의”를 “전쟁 및 호국의”로 한다.

제2조 중 “전쟁기념사업회”를 “호국기념사업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쟁기념관”을 “호국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쟁”을 “전쟁 및 호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상”을 “실상 및 국가수호활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념사업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쟁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따른 호국기념사업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전쟁기념사업회법</u>	<u>호국기념사업회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전쟁기념사업회</u> 를 설립하여 <u>전쟁</u> 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u>전쟁</u> 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호국기념사업회</u> ----- <u>전쟁</u> 및 <u>호국</u> 에----- ----- <u>전쟁</u> 및 <u>호국의</u> ----- ----- ----- ----- -----.
제2조(법인격) <u>전쟁기념사업회</u> (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u>호국기념사업회</u> ----- ----- -----.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전쟁기념관</u> (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운영 2. 3. (생략) 4. <u>전쟁</u> 에 관한 학예활동 5. 6. (생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u>전쟁</u> 의 <u>실상</u>	제5조(사업) ① ----- ----- -----. 1. <u>호국기념관</u> ----- ----- ----- 2. 3. (현행과 같음) 4. <u>전쟁</u> 및 <u>호국</u> ----- ----- 5. 6. (현행과 같음) ② ----- -----

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회가 수집·보존·관리 및 전 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역사 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④ (생략)	--<u>실상 및 국가수호활동</u>----- ----- ----- -----. ③·④ (현행과 같음)
---	--